

##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장규원\*\* · 윤현석\*\*\*

### 국 | 문 | 요 | 약

오늘날은 정보사회라 한다. 정보사회의 중심에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 모두가 우리에게 유용하며 이롭다. 그러나 또 한편 족쇄가 되어 우리의 생활을 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았다. 정보 전달의 일방성, 폐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많은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의 신뢰도 문제이며, 전해들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진다. 아무도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 올지 모른다.

특하면 개인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신상털기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고,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된 문제가 현실에서 조화를 꾀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여지 없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최근 무선 기술의 활용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술과 인간의 삶이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 구분이 아닌 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환경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떠다니는 나의 정보를 자료를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무분별한 신상털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정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하고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어 : 개인정보, 개인정보권, 개인정보침해, 프라이버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 이 논문은 2011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

## I. 머리말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디지털 시대의 인간, 호모 디지쿠스의 시조새가 되어야 한다.<sup>1)</sup> Smartphone, iPad, Android, WiFi, twitter, Facebook ... 오늘날은 자고나면 새롭게 쓰이는 이러한 용어들이 때론 생소하게 다가오는 정보사회다. 이들 아이티(IT) 기술과 기기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한다.<sup>2)</sup> 소위 손가락보다 마우스를, 딸랑이 대신 남아도는 휴대폰을 만지면서 자란 세대인 N세대(Net Generation)이다. 나이가 들어서야 아이티 기술과 기기를 익히고 다뤄야 하는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달리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라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하이퍼링크(hyperlink)로 정보의 바다에서 숨을 쉬듯 지식을 흡수하는 일에 익숙하다. 반면 디지털 이주민은 아무리 디지털 시대에 적응했다 해도 사회화와 학습방법이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른 방식으로 훈련되어 있다.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로 이민 간 이민자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세대의 사회는 많은 위험 요소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미니 홈페이지 수많은 사진과 자료들이 올라 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일컬어 포토샵 처리 기술 등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왜 올리는 걸까. 일컬어 또래 집단의 규율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나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sup>3)</sup> 공유(共有)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sup>4)</sup>

1) 윤종록, 호모디지쿠스로 진화하라, 2009, 9쪽.

2) 돈 탭스콧/이진원 옮김, 디지털 네이티브, 비즈니스북스, 2009, 245쪽 이하 참조.

3) 존 펠프리·우르스 가서/송연석·최완규 옮김, 그들이 위험하다 -왜 하버드는 디지털 세대를 걱정하는가, 깰리온, 2010, 36쪽 이하 참조.

4) 199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PC통신 사무실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PC통신 사업의 고객을 이용자라고 부를 것인지, 사용자로 부를 것인지가 이슈였다. 결국 논쟁은 이용자로 귀결됐다. 사용자라는 단어에는 배타적인 독점의 의미가 강한 데 반해, 이용자라는 단어에는 서비스를 빌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화두다.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story’와 ‘tell’, 그리고 ‘-ing’의 세 요소로 이루어졌다. 스토리는 인쇄매체의 시대에는 주로 이야기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글로 써서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읽는다. 그래서 이야기되어진 것이다. 이는 곧 문자문화 시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텔(tell)은 ‘말하다’ 또는 ‘정보를 주다’라는 청각적 의미 외에 시각, 촉각은 물론 후각과 같은 다른 감각까지 포함하는 다매체를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인쇄매체보다 멀티미디어로 정보가 제작되고 소비되는 상황에서 이야기에 문자적 요소보다 다매체적 요소가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ing는 현재상황의 공유, 그에 따른 상호 작용성을 의미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맥락 속에 포함되는 구술 시대의 상황과 일치하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 상호작용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를 뜻한다.<sup>5)</sup> 효율적인 의사전달은 사실 현장 멀티미디어 방식인 구술이다.<sup>6)</sup>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 화상 채팅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면서 지식의 전달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매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제 또 다른 구술 시대가 된 것이다.

인터넷에 올린 자료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무선 기술의 활용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술과 인간의 삶이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 구분이 아닌 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sup>7)</sup>

쓰고 ‘공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논쟁을 토대로 PC통신은 서비스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곽아람, “인터넷을 서비스로 인식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2010).

- 5) 최혜실, “이야기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지식의 최전선 2(최혜실 외), 2008, 130쪽.
- 6) 재판도 구술주의(Mündlichkeitsprinzip)가 기본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직접 보며 말로 떠들면서 법관에게 신성한 인상을 주고 법관이 진술태도를 통하여 진술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법관이 정확한 심증형성을 할 수 있다는 까닭이다.
- 7) SNS를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용어로 같이 쓰이고 있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 간의 관계맺기를 지원하고, 축적된 지인 관계를 통해 인맥 관리,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태적인 의미를 새길 수 있다. 이에 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정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이 글은 웹상에서 인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이 글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Twitter, MySpace, Facebook, Me2day 등)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이 회자되듯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신상털기 등은 그러한 예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한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II).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이 모호해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어떤 형태로 자리잡아야 할 것인가를 아울러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침해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따질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대응, 즉 입법적 노력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에서 다루고자 한다(III). 이를 바탕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형사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IV).

## I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정보 전달의 일방성, 폐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많은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의 신뢰성도 문제다. 실제 인터넷에는 엉터리 내용도 가득하고 그에 따라 ‘전해들은’(hear say)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진다.<sup>8)</sup> 아무도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올지 모른다. 인터

---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의미로 SNS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유진·배국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동향과 전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5쪽; 정영화,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의 실현을 중심으로”, 2000, 21쪽 이하 참조.

8) 전해들은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 evidence)는 증거능력도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예컨대, 피고인의 살인 현장을 목격하였다는甲이 乙에게 그 목격 사실을 얘기한 것을 乙이 들었다고 법원에서 진술한 경우이다.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에서 새끼 쳐 나가는 글들이, 소위 ‘카더라 통신’(=라고 하더라 식의) 글이 아닌가.

넷 정보로 똑똑해진 소비자들에 의해 경제가 좌우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도 촛불 시위는 물론 선거를 통해 인터넷의 힘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디지털 공간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 1. 정보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는 근본적으로 어떤 인격에 관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의 문제와 직면한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정보의 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라 할 수 있다.<sup>9)</sup>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충돌할 때 문제가 된다. 프라이버시는 지극히 사적인 것일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행위는 공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과 사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0)</sup>

### 가. 공과 사

특하면 개인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신상 털기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고,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된 문제가 현실에서 조화를 피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게시판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칠게 다루고 싸운다. 정녕 인간은,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말한 것처럼 인간에 대해 늑대인 것이다(homo homini lupus est). 이제 살아가기 위해 “공과 사는 무엇이며, 그 경계는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자유는 분명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다. 절대 고립과 투명화는 모두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빈틈없는 감시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나 관찰되고 기록되고 평가된다. 범인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일상적인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얻은 것이 아님에도 거리마

9) 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 2009, 207쪽.

10) 이하의 내용은 이진우, 앞의 책, 2009, 89-91쪽 참조.

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로 가득하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로 대접받아야 하지만 도시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환경이 되어버렸다. CCTV 아래를 용케 피해 지나가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내지는 인터넷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행적은 낱알이 드러난다. 누구든 빅브라더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파놉티콘에 갇힌 꼴이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관찰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관찰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한 정보를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무한한 축적 가능성과 유통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홈페이지에 올린 개인 정보는 언제든지 조작되어 나도 모르게 유통될 수 있다. 어쩌면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처럼 전자화된 개인 사진과 프로필이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sup>11)</sup> 정보가 흘러넘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프라이버시와 사적 영역은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공·사의 의미는 어떠한가?

첫째, 공공성에 속하지 않는 모든 개인 영역을 사적 영역이라 생각할 수 있다(공론 영역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 여기서 공과 사를 구별하는 핵심 문제는 주로 행위의 성격이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도 그 성격과 양태에 따라 공적이기도하고 사적이기도 하다. 사유화 또는 민영화(privatization)라는 용어처럼 한때 공적인 것으로 파악되던 문제들이 이제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고 있지 않은가.

둘째, 전통적 의미에서 사적 영역은 사생활의 장소이다(공·사구별에 관한 사회과학적 논의). 사적 영역의 생성과 발전을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고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동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것은 가정, 친밀성, 가정생활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사적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주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페미니즘 관점에서 의 비판은 가정을 주로 전통적인 권력과 지배의 공간으로 이해한다. 즉 사적인

11) 사이버 세상에선 태어나는 사람은 있지만 죽는 사람은 없다.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이버 공간의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는 폐쇄되지 않고 살아 있다. 곧 사이버 공간에 유명이 넘쳐난다. 유족이 상속하고 싶어도 관련 법규 때문에 블로그 등에 접근조차 못하거나 아예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 성숙기에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다. 디지털 유산(digital assets)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유헤 · 권순영, “죽은 자의 디지털 정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슈와 논점 제142호, 2010 참조).

공간이 아니다. 전통적 지배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젠더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가정은 공적인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논의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사적인 권리로 이해한다(법적 논의). 여기서도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에 따라 사적인 권리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인격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서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일치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주택이 전통적인 사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몸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주의화 시대의 최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공적이라 한다면, 나만이 출입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사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도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대한 보호법익도 관점에 따라 주장이 여럿 있다. 주거권이라는 독립된 법적 권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주거침입죄의 입법 취지가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에 있는 만큼, 사생활의 보호가 추가 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적 장소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는 개인의 사생활과는 무관한 영역이므로 그 보호법익은 업무상의 평온과 비밀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중심 문제로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자기발견은 근본적으로 인간 존엄, 즉 어떤 이유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적 가치의 발견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고, 아울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까닭, 보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은 언뜻 보기에 하잘것없어 보이는 자료라도 공적, 사적 영역에서 추출하여 돈벌이가 되는 상품으로 가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적 인권의

보호에 대해 최초로 등장한 개념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sup>12)</sup>

개인정보 자기결정권(informationelles Selbstimmungsrecht)은 개인 정보의 수집, 보유, 사용, 제공 등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주체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의해 무한대로 수집, 축적, 처리, 가공, 이용, 제공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환경에서, 특히 정부나 민간에 의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정부나 기업에 개인의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 프라이버시권(information privacy)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참여로서의 프라이버시’(privacy as participation)라는 적극적인 의미로도 새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이며 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제한할 때는 수집 목적, 이용형태, 처리방식에 따르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대한 국가 이익의 보호나 공공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인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마음대로 처리나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기본 정신을 고려해 볼 때 종래 국가나 기업 즉, 공적·사적 영역에 의해 타당한 근거나 정보주체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처리해온 관행은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완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sup>13)</sup> 무엇보다도 익명거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익명거래의 자유 또는 익명권은 정보의 주체가 국가 등의 타자와 온라인 교섭 내지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자유를

12) 이필재,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2009, 89-94쪽.

13) 전지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형사정책적 검토”, 2005, 39쪽 이하 참조.

말한다. 익명권이야말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권리라 하겠다. 그리고 정보처리금지 청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처리금지 청구권은 기본적인 정보처리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의 정보처리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정보처리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 시스템 공개의 원칙, 정보 분리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 청구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가 이를 열람하여, 그 정확성과 최신성 및 완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쉽고 값싼 비용으로 무한대로 저장처리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 특히 요구되는 권리이다.

## 2. SNS 등장과 개인정보의 문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는 웹상에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실제적인 서비스를 지칭하지만, 웹 기반의 사회적 연계 현상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정된 시스템 내에서의 공개적이거나 또는 조건부 공개적인(public or semi-public) 프로필 정보를 형성하여 타인과 연계하고, 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정보를 볼 수 있게 구축된 웹 기반 서비스’라고 그 개념을 정리하기도 한다.<sup>14)</sup>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뿌리는 1995년 미국 클래스메이트닷컴(Classmates.com)과 식스디그리닷컴(SixDegree.com)에서 찾는다.<sup>15)</sup> 이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이 서로의 프로필을 공유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지인이나 친구들과 연계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이후 다양한 기술 보완과 연계기능이 첨가되면서 각종 소셜 정보검색, 동

14) 송경재,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사용자의 특성과 정치참여,” 2010, 129-157쪽 참조; Danah Boyd/Nicole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1), 2007. 이에 대해서는 [http://jcmc.indiana.edu/vol13/issue1/boyd\\_ellison.html](http://jcmc.indiana.edu/vol13/issue1/boyd_ellison.html) 참조. (접속일자 2011. 08. 12)

15) [http://jcmc.indiana.edu/vol13/issue1/boyd\\_ellison.html](http://jcmc.indiana.edu/vol13/issue1/boyd_ellison.html) (접속일자 2011. 08.12)

창 찾기, 소셜 마케팅, 친구만나기 사이트, 애인 찾기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본격화된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사용자 수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마케터닷컴(eMarketer.com)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사용자는 39%에 불과했지만 2009년 말에는 59%로 증가했다. 대표적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com)은 일평균 방문자수는 3,767.9만 명, 마이스페이스(Myspace.com)도 1,733.3만 명에 달한다.<sup>16)</sup> 페이스북 통계 사이트인 페이스베이크어닷컴(Facebakers.com)은 2010년 11월 30일 현재,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5억 7,44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11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에만 사용자수가 18.13%나 증가하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시대적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참여형 네트워크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sup>17)</sup>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용은 산업사회의 질서와 다른 정보네트워크사회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새롭게 구성되는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의 변화상을 구현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적 규범과 문화, 법,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를 꾀하는 토대가 된다. 물론 급격한 기술발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서는 기술의 사회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안정화되면 결국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s)에서 재형성되기 때문이다.<sup>18)</sup>

기술과 사회적 수용이란 두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가 소용돌이치며 수렴과 융합, 분화가 반복되는 것이 정보네트워크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어느덧 정보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정보통신기술 환경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질 수

16) 페이스북과 함께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마이스페이스는 2011년 스페시픽미디어(Specific Media)라는 기업으로 매각됐다(ebuzz.co.kr 참조).

17) <http://social.venturebeat.com/2010/02/10/54-of-usinternet-users-on-facebook-27-on-myspace> “54% of US Internet users on Facebook, 27% on MySpace,” (LeeAnn Prescott, 2010) (접속일자 2011. 08.14)

18) Andrew Chadwick,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2006, pp.18-19.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최근 무선 인터넷의 활용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술과 인간의 삶이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 구분이 모호해진 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관계의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와 함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 예로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페이스북은 친구 찾기에서 사용자의 이메일 리스트를 활용하여 발송한다. 그것은 가입 과정에서 이메일 정보의 사용을 동의했기 때문이다.<sup>19)</sup> 정보 네트워크사회의 진입은 시민참여가 확대되어 개인의 시민권으로서의 참여와 소통, 표현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타인으로부터의 피해를 쉽게 받을 수도 있다. 이미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논란거리가 된지 오래다. 미국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활용한 인적 사항 확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과도한 연결기능(networking)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위치 서비스(GPS)가 확대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노출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sup>20)</sup> 요컨대, 시대적 환경변화에서 시민참여와 정보공유,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신장된 반면, 개인의 정보 인권침해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것이다.<sup>21)</sup> 정보통신기술의 민주적인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이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위시로 한 네트워크의 발전은 과거에 소수가 다수를 바라보는 형태에서 네트워킹 관계로 인한 다수가 소수를 바라보는 시놉티콘(synopticon)도 가능하다.<sup>22)</sup>

19) 금혜성, "Privacy on the Facebook", 2010, 22-27쪽.

20) 송경재, 앞의 글, 2010 참조.

21) 김진웅, "언론의 자유와 인권," 2007, 2쪽; Andrew Chadwick, Ibid, pp.257-258; Thomas Mathiesen, "The Viewer Society: Michel Foucault's Panopticon Revisited", 1997, p.215 참조.

22) 강상현,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기술과 사회 변화," 2006, 134-135쪽.

정보인권에 관한 전통적 논의와 함께 마이크로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는 기술발전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저변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효율성과 신속성, 상호작용성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사회로의 진전을 통한 지식기반의 새로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반대로 정보통신기술 자체를 하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감시기술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경고한다.<sup>23)</sup>

###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권 개념의 변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념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sup>24)</sup>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분자화되어 있는 개인이 자신과 비슷한 관심과 취향을 가지고 있는 타인들과 재공동체화하는 과정에 매우 적합한 서비스이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성장은 현대사회의 개인에 대한 성찰과 관련하여 매우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의 구체적인 동기는 근본적으로 자아의 확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심화,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분자화된 개인이 재공동체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자아, 관계, 공동체라는 사회적 욕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재공동체화의 과정이 소셜네트워크

23) Andrew Chadwick, Ibid, 2006; 최민재 · 양승찬,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 2009; 허진성, “SNS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10 등 참조.

2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향과 활동을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온라인 사회관계의 형성에 중점을 둔 서비스이다. “A Social network service focuses on the building and verifying of online social networks for communities of people who share interests and activities, or who are interested in exploring the interests and activities of others, and which necessitates the use of softwar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 Report and Guidance on Privacy in Social Network Services: “Rome Memorandum”, 2008 참조)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표출하기에 매우 적절한 공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달성하는 데에 가장 핵심은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아의 확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어떠한 인상을 전해준다. 또한 상호관계와 공동체에서 개인정보는 서로 간의 친밀감과 동질성을 가져다준다. 즉,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욕구의 달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를 자신의 결정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 공개과정이 진정 합리적인 결정의 결과인지에 대하여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공개과정이 합리적인 행동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과 연계된 여러 가지 심리분석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sup>25)</sup> 이는 곧 타인들이 그 행동의 문제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오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 혼자만 노출되어 있을 때보다 여러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안심하게 된다고 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단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깐’라는 쉬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행위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쉽게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에서는 낯선 타인이 있는 경우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떠벌리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낯선 이가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망각한다. 특히 친구공개나 카페공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된 자신의 정보는 손쉽게 낯선 이에게로 전해질 수 있다.<sup>26)</sup>

25) Robert B. Cialdini, *Influence: The Psychology of Persuasion*, Revised Edition, 2006, pp.111-121.

셋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 특히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무언가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이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신뢰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다는 전제(일종의 감시)가 존재한다.<sup>26)</sup> 문제는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킹서비스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현실 공간에서 친구나 가족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현대사회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자화된 개인’이 재공동체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킹서비스에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아, 관계, 공동체라는 귀속에 만족을 찾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공개이고, 결국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공개의 과정이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용자 개인의 책임으로 단순하게 귀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첫째, 정보사회에서 분자화된 개인이 재공동체화를 지향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이자, 결정의 문제로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마음에 걸리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간단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둘째, 공개 과정이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나 착각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당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소셜네트워크킹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단순히 이용자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킹서비스 이전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 유통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이 직접 제공한 정보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26) David Brin, *The Transparent Society: Will Technology Force Us To Choose Between Privacy And Freedom?*, 1999, pp.89-103.

27) David Brin, *Ibid*, pp.121-127.

개인이 게재한 글이 있는 해당 게시판,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등장으로 개인정보의 제공 방식과 공유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1회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Life Logging)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된 개인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친구의 친구를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공유되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한 누군가에 의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기도 한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개인의 정보 공개와 그 정보에 대한 응답 혹은 새로운 정보 제공으로 네트워크 관계형성 및 유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sup>28)</sup>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식별 정보는 아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하는 글 또는 영상을 통하여 위치와 가족정보, 그리고 성향 정보 등이 노출되고 전달되며 악용되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트위터에 올려진 공연을 보러 간다는 정보로 인하여 빈집털이를 당한 사건이 있었으며(조선일보, 2010. 4. 17일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털을 통하여 검색 가능하고(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1. 2. 9일자), 이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의 발원 대상자에 대한 ‘신상 털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데일리안, 2010. 11. 24일자).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자기정보의 관리 통제 등에 기초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sup>29)</sup>

28) 구글(Google)의 프로필 작성란에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친구들이 당신을 찾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The more information you provide, the easier it will be for friends to find you)라고 되어 있다.

29) 헌법재판소는 ①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②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그리고 ③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권리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3.10.30. 2002헌마518 참조).

### III.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

#### 1. 취약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구조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개인정보유출이나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근본적으로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보다 보안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카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직접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Twitter) 등 소셜네트워킹사이트의 계정을 만드는 것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가치는 자신이나 친구들이 온라인상에 올리는 글이나 자신이 사용한 위치정보, 검색 및 구매 정보 등으로 이뤄진다. 이는 모두 데이터마이닝(datamining,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해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광고나 마케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바로 돈으로 직결된다. 만약 이런 가치가 없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회원 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리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물론 새로 생기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좀 더 개인화된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빼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카카오톡이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폰 결제지,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약관을 변경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페이스북이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킹 개인정보보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로비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어났었다. 미국 소셜네트워킹 개인정보보호법안은 2010년 2월 엘렌 코버트(Ellen Crbett) 주 상원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18세 이하 이용자의 집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 공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inews24.com 2010. 10. 28일자).

페이스북이 소셜네트워킹 개인정보보호법을 저지하려고 로비까지 한 것을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개인정보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될수록 페이스북은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페이스북의 기업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이용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고, 개인의 개별적인 합리성에 바탕을 둔 선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현행 법제도를 살펴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본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65호,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12호)이다.<sup>30)</sup>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라는 두 주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획득 및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 수집 시 의사사항의 고지’, ‘개인정보 위탁사실의 고지’, ‘영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사실의 고지’, ‘목적 외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및 동의철회 보장’,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이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30)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1년 9월 30일 폐지한다(법률 제10465 참조).

1016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90호) 등 개별법에 의하여 공공기관, 온라인사업자, 신용정보사업자 등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업무 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이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보(수기문서 포함)까지도 보호를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과 민간이 통합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설립되며(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규정이 도입(제25조)되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틀은 기존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개인정보 수집자와 개인정보 제공자라는 양자적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공자(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인 동의권,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동의 철회권 등이 보장되는 법제도 환경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이러한 기본적 법제구조의 문제는 그러한 기본 구조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동하는 데에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당사자 개인의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기본적인 틀은 개인정보 제공자와 개인정보 수집자의 양자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의 정보공개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띤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사람들은 자아확인, 관계 형성 및 공동체에서 동질감과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전제로 자신에 대한 정보(일상정보 등)를 공개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전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의 대상은 서비스 제공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타이용자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타이용자들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자의 지위를 갖는 것인가? 수집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타 이용자들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자의

각종 의무들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을 지켜도 되는 것인가?

둘째, 개인정보 제공과정의 문제이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틀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주요한 시점은 가입 당시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매시점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법제가 고지와 동의라는 절차를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의 규모와 범위, 기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구체적 설정 절차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던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기본 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모습을 간략하게 알아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발 빠르고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법규는 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DPD)이 있고, IWGDPT(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는 2008년 3월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sup>31)</sup>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한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는 2009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프로파일 정보 관리, 사업자의 정보 공지 의무, 제3자와의 정보 제공, 직접 마케팅, 이용자 권한, 아이 및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공지한 바 있다.<sup>32)</sup>

영국은 온라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법으로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이 있는데,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자의 지위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31)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 Report and Guidance on Privacy in Social Network Services, 2008.

3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원태·유지연·박현유·김위근,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2010 참조.

대하여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며, 법률 제32조에 나오는 예외(레크리에이션과 신문잡지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 ICO)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특히 청소년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sup>33)</sup>

독일은 개인정보 기본법으로 독일연방 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 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된다.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이 적용되는데, 텔레미디어법에 따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연방 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34)</sup>

캐나다는 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의 위험을 경고하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What Does a Friend of a Friend of a Friend Need to Know About You?)라는 비디오를 제작 배포하였다.<sup>35)</sup>

### 3. 소셜네트워킹서비스상 침해 대응과 개선방안

#### 가. 정보사회에서의 윤리

정보사회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높아졌으나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의식수준은 낮아 그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약관을 확인함이 없이 부주

33) 영국 정보위원회(ICO), <http://www.ico.gov.uk/Youth/section3/intro.aspx> (접속일자 2011. 07. 12)

34)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 Ibid, 2008.

35)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OPC), Social Networking and Privacy (2007. 10. 10) ([www.blog.privcom.gc.ca/index.php/2007/10/10/social-networking-and-privacy](http://www.blog.privcom.gc.ca/index.php/2007/10/10/social-networking-and-privacy)) (접속일자 2011. 07. 12)

의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이용자의 경우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런 개인정보를 친구나 동료들에게 스스로 제공,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 대한 신뢰상실로 정보사회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각 분야마다 그에 따른 사회 통념적 윤리규범과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정보 통신분야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윤리규범과 예절이 있는 것이다. 전화예절, 서신예절, 방송윤리, 신문윤리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IT 분야는 급속한 활용 확대로 아직 윤리관이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시스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윤리 도덕적 규범 속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보통신기술은 순간적으로 실행될 뿐 아니라 순간적으로 실행된 종적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취약성을 악용하여, 또 일부 소수인원만이 전문가나 실무자로서 알고 있는 시스템의 전문성 등을 악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에 많은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런 듯 온라인 환경을 통제하는 가치 규범적 규율이 없어 윤리적 지체현상이 발생하는 정보윤리 부재의 문제가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각종 규정이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 사업자대표, 소비자대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소위 맞춤형 개인정보관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회의체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기준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과 홍보는 중요하다. 이용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 자신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법적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 나.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가장 꺼려하는 것은 자신의 정보가 의도치 않은 경로를 통해 원치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저장된 정보는 지인 혹은 친구에게 공개하기 위해 진실성을 갖춘 경우가 많으므로, 그 우려는 더욱 심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기본 프로필이 비공개로 설정됐을 경우에도 검색 엔진을 통해 해당 프로필이 검색이 되면서 제한된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출 방지와 최소화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기업은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이트에서 수집되고 저장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수집 보관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에 사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 내에서 노출이 된 경우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자는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즉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사용목적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탈퇴하는 경우 기록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을 남겨야 한다는 것들이다.

2010년 4월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서 발표된 “Facebook’s Eroding Privacy Policy: A Timeline”에 따르면,<sup>36)</sup> 페이스북은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회원가입 절차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았다. 2006년부터는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바뀌었지만, 기본 설정은 자신이 설정한 그룹의 사용자들끼리만 공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사용자가 개인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정보 공개보다는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페이스북의 초기 정책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이다. 학교나 거주 지역, 혹은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들 중 적어도

36) <http://www.eff.org/deeplinks/2010/04/facebook-timeline> (접속일자 2011. 08.15)

한 그룹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이 의무화됐다. 또한 이름과 학교명, 프로필 사진이 기본으로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는 정보 공개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됐다. 같은 해 11월부터 개인정보 선택사항에 ‘everyone’이 추가됐다. ‘everyone’으로 설정된 정보는 페이스북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공개됐다. 특히 일부 정보는 기본설정부터 ‘everyone’으로 설정됐으며, 개인정보 설정을 검토하고 변경해야 할 의무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변경된 지 한 달 만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사용자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 친구 목록, 성별, 거주지와 속해있는 네트워크가 의무공개 조항으로 변경돼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채널에 공개됐다.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 검색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뿐이었다. 이때부터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0년 4월부터는 오픈 그래프와 소셜 플러그인에 맞춰 사용자의 ‘일반 정보’를 접속하는 모든 채널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일반 정보’에는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프로필 사진, 성별, 아이디, 페이스북 커넥션, ‘everyone’으로 설정된 모든 콘텐츠가 포함된다.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 밖에 남지 않았다. 특정 채널로 개인정보를 보내 주지 않으려면 페이스북 커넥션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페이스북이 많은 이용자를 모으고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수록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반면, 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옵션은 점점 더 줄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개인정보를 광고업체와 사업 파트너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더욱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기업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하고 있다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설정조차 강제한다면 이용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0년 5월에 3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 회원이 탈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반발해 탈퇴했던 학생들이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대체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기업들은 이용자가 스스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양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프로필에 접근하는 다른 이용자에 대해 그룹별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그룹별로 개인정보 공개의 양과 범위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한 이용자나 그룹에 대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종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으로서, 세부적인 영역별로 개인정보 관련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국가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하여야 할 책무, 개인정보 보호 기구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단일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하나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그야말로 단일한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각각의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한편 기본법 제정 논의에서 공공과 민간의 통합이나 구분이냐의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기 위해 포함하여야 할 규정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sup>37)</sup> 및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7) 이에 대해서는 백운철·이창범·장교식, 개인정보 보호법, 2008; 정영화, 앞의 글, 4-5쪽 참조.

(2)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유럽 연합의 정보보호지침 제28조는 각 회원국에게 해당 영역의 개인정보처리를 감시하고 조사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구로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회원국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 홍콩,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합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반드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관장할 필요는 없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과정이 상이할 뿐 아니라, 피해 구제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절차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조직법상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가진 행정체제상 위치와 권한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기관 상호 간의 견제가 가능한 고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민간부문에서는 국민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과의 권력관계가 그리 큰 작용을 하지는 않으므로 보다 유연한 조직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발달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된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각기 별도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주로 수행하는 기능이나 권한, 실질적인 운영상황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미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피해구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드시 공공부문과 통합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양자를 구분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개인 정보보호기구 및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사법기관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집행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전문 전담기구가 어떠한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각국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위원회 형태와 독립제 형태가 있다. 커미셔너(Commissione)라 불리는 독립제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기구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개인정보정책을 순수하게 커미셔너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외부에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를 두고 운영한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인식이나 연구가 아직은 전개되는 중에 있어, 중요한 개인정보정책을 실시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다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한다고 할 때, 이러한 기구가 본래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기관에 귀속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기능 및 권한을 보장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법기관 내의 개인정보 보호 기구는 사법적 지위를 보장받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해당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침해 예방적 기능부터 사후 피해구제의 기능까지 총괄하여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피해구제의 기능은 개인 정보침해 피해자 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영역에서 어떠한 다른 국가보다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분쟁조정제도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정권고권이나 시정명령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4) 성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도 좋으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필요최소한의 영역 안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존하도록 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본인이 원할 경우 미성년자 프로필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공개범위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보호자가 원할 경우 즉시,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정지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V. 결론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자유로운 소통의 길이기도 하지만 통제와 감시, 프라이버시 침해의 통로이기도 한다. 정보사회의 명암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립된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개인의 자유를 확장했지만, 역설적으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개인의 자유권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때론 보이기 싫을 때도 있고, 들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론 감추고 싶을 땐 감출 수도 있어야 한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때론 정보화와 인권은 맞대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보화는 개인정보의 입력과 집적이 요구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정보화와 인권의 문제를 수평선상에서 인식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어느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제로섬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발전과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서로 분리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양자가 서로의 존재를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권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알권리는 제도의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 수 있는가는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공개할 경우에는 그 범위와 정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가족, 소득, 취미 등과 같은 개인 정보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열어 놓아야 할 것인지는 사회적 여건과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 구조를 마련하여 하며, 이러한 공적 구조가 지향해야 하는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강화는 단지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여야 한다.

자기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타인과 유대감, 동질감, 친밀감을 형성하는 취향, 행동, 관심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사람들에게 가입시 작성하는 성명, 주소 등의 신원정보만이 개인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올리는 다양한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개과정에서 자신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자이지만,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수집자가 될 수도 있고, 침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타인의 취향과 관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탐색하여 누출하는 것은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른 행동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취향과 관심에 대한 정보가 다량 공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특성상 부지불식간에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프라이버시는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권리’라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양성이 지배되는 공공장소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과 간섭을 자제할 시민 예절(civility)이 요구된다. 정보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 또는 공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공개하여야 하는가. 정보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상현,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기술과 사회 변화,”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6.
- 곽아람, “인터넷을 서비스로 인식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2010.
- 금혜성, “Privacy on the Facebook”, IT정치연구회 2010년 9월 발표자료집, IT정치연구회, 2010.
- 김진웅, “언론의 자유와 인권”, 언론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언론인권센터, 2007.
- 돈 탭스콧/이진원 옮김, 디지털 네이티브, 비즈니스북스, 2009.
- 백윤철 · 이창범 · 장교식,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08.
- 송경재,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사용자의 특성과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 유향 · 권순영, “죽은 자의 디지털 정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슈와 논점 제14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윤종록, 호모디지털쿠스로 진화하라, 생각의 나무, 2009.
- 이원태 · 유지연 · 박현유 · 김위근,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 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 돌베개, 2009.
- 이필재,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전지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형사정책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6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정영화,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개인정보보호법률(Privacy Act)의 실현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2000.
- 정유진 · 배국진, 소셜네트워크킹서비스(SNS)의 동향과 전망, 한국과학기술정보원, 2007.
- 존 펠프리 · 우르스 가서/송연석 · 최완규 옮김, 그들이 위협하다 -왜 하버드는 디지털 세대를 걱정하는가, 갈리온, 2010.

- 최민재 · 양승찬,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009.
- 최혜실, “이야기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지식의 최전선 2(최혜실 외), 한길사, 2008.
- 허진성, “SNS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언론법학회, 2010.
- Andrew Chadwick,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Danah Boyd/Nicole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1), 2007.
- David Brin, *The Transparent Society: Will Technology Force Us To Choose Between Privacy And Freedom?*, Basic Books, 1999.
-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 (IWGDPT), *Report and Guidance on Privacy in Social Network Services: “Rome Memorandum”*, 43rd meeting, Rome/Italy, 3-4 March 2008.
- LeeAnn Prescott, “54% of US Internet users on Facebook, 27% on MySpace,” in: <http://social.venturebeat.com/2010/02/10/54-of-usinternet-users-on-facebook-27-on-myspace>, 2010.
- Robert B. Cialdini, *Influence: The Psychology of Persuasion*, Revised Edition, Harper Paperbacks, 2006.
- Thomas Mathiesen, “The Viewer Society: Michel Foucault's Panopticon Revisited”, *Theoretical Criminology*, Vol. 1/2, Sage Publications Ltd., 1997.

##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s Protection in Cyber Space : Focusing on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Chang, Gyu Won · Yoon, Hyun Seok

These days is said as information society. In the center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are putting down roots. Such everything is useful and profitable to us. However, it is tightening our living sometimes by becoming shackles on the other hand. For example, Internet has changed our life. Internet overcame information delivery's one-sided nature and exclusive one, and then enabled approaching to a great number of information equally, but exposing damage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is becoming serious social problems. Reliability on information having been overflowed in the Internet is problematic, and words having been delivered are spread while being followed one after another. Anyone could not know that it turns back with certain figures.

Personal information's whisk publicizing it on the Internet recklessly has been appeared as a large social problem without any reason, and pitiful matters of taking own life in person were happened because occurred problems in the cyber space could not make accords in actuality. Personal privacy has been collapsed beyond controversies ultimately. By appearances of Smart phone together with wireless technology's utilization, technology and human's life are being appeared as amalgamative figures instead of space's divisions called on-line and off-line only. It is because social networking service becomes connected, and new social relation and structure are formed as its reasons.

This study looks into exposing problems in such SNS environment, and think about how keep my information and data having been floated in the Internet, how could reduce the reckless personal information's whisk, and what is required to

us for surv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us tries to suggest laws related to the information's protection together with policy's directions.

- ❖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rights, Personal information's infringement, Privacy, Social Networking Service

